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시행 2016.4.20]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9호, 2016.4.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 044-215-4445

제21조(비보고 금융회사) ①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이하 "정부단체등"이라 한다). 단, 특정보험회사, 수탁기관, 예금기관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 다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
3. 면제 집합투자기구
4.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
5.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6.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단체(이하 "저위험 비보고 금융회사"라 한다)

② "정부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부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부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소득이 사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사인이 보편적인 복지 또는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부단체가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아니할 것

나. 해산시 단체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정부단체에게만 귀속될 것

③ "국제기구"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가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를 말한다.

④ "한국은행"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완전히 소유하며 예금계좌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⑥ "다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3. 펀드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단독 수익자를 보유하지 아니할 것

4.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5.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

나.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

다. 퇴직,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특정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때에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

라.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

마.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하일 것

⑦ "소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3. 참가자가 50인 미만일 것

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5.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 및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되는 펀드

6. 펀드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가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7.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 ⑧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란 정부단체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말한다.
 1. 정부단체등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가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부단체등을 위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가자
- ⑨ "면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 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또는 보고대상 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를 말하며, 보고대상 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한다.
- ⑩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란 신탁의 수탁자가 금융회사이고 우리나라 또는 다른 보고대상 관할권에 신탁의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의 신탁을 말한다. 다만,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신탁의 수탁자가 보고 금융회사, 미국의 금융회사 또는 FATCA 참여금융회사이고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신탁을 말한다.
- ⑪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란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FATCA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 및 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를 말한다.
 1. 투자자문 제공
 2.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 ⑫ "저위험 비보고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
 - 가. 국내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 규제될 것
 - 나.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와의 금융계좌 거래를 위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라. 금융회사가 외국에 설치한 해외법인 또는 지점이 없을 것
 - 마. 조세의 원천징수 목적상 매년 금융계좌와 관련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할 것
 3. 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우리나라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로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융회사

제23조(제외계좌) ①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계좌가 개인퇴직계좌로서 규율되거나 퇴직수당 또는 연금수당(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수당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위해 등록되거나 규율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의 일부일 것
 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 가.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 나.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3. 과세당국에 대해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4. 특정 사건(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5. 제18조의 계좌잔액 합산 원칙 및 제19조의 통화 환산 원칙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미화 10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 ②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퇴직 이외의 목적상 투자기구로서 규제의 대상인 계좌로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거나, 또는 퇴직이 아닌 목적을 위한 저축수단으로서 규제의 대상인 계좌
 2. 세제혜택 대상일 것
 3. 인출은 투자 또는 저축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 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고 그러한 조건 성취 전에 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
 4. 제18조의 계좌잔액 합산 원칙 및 제19조의 통화 환산 원칙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 ③ 우리나라에서 유지되는 생명보험계약 중 보험적용기간이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기 이전 만료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1. 정기 보험료가 보험계약 만기일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중 최소

- 연간 1회 수납되며 해당 계약 기간 중 보험료 금액이 감소하지 아니할 것
- 2.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금액을 중도에 이용할 수 없을 것
- 3.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해약 시 지급되는 금액(사망보험금을 제외한다)이 납입 보험료 중 보험 계약기간 동안의 위험보험료(사망, 질병 등 보장부분)와 사업비를(실제 부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감한 금액 및 기타 납입금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 4. 보험계약이 보험가치의 양수인에 의해 보유되지 아니할 것
- ④ 상속재산으로만 구성된 계좌로 관련 문서에 사망인의 유언장 또는 사망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위탁계정은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 1. 법원 명령 및 판결과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도, 교환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 가. 해당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채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급액을 담보하는 계약금, 증거금 및 예치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재산의 매도, 교환 또는 임대와 관련되어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 나. 계좌가 양수인의 자산 양도가액 지급 의무, 양도인의 우발 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 또는 임대 또는 임차인 임대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지급 보증만의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것
 - 다. 해당 재산의 양도, 교환 및 양여 시에, 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시에, 구매자, 판매자 또는 임대 또는 임차인 등에게 해당 계좌의 자산 및 동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지급 또는 분배될 것
 - 라. 해당 계좌가 금융자산의 양도 또는 교환 등에 관련하여 개설된 증거금 계좌 또는 유사한 계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마. 신용카드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할 것
- 3.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제공되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오로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및 보험료 등의 추후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액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 4. 오로지 추후 세금 납부를 촉진하는 금융회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 ⑥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계좌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계좌를 포함한다.
 - 1.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같은 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법률 제737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 2.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퇴직 이외의 목적을 가지는 계좌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포함한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비과세 종합저축(구(舊) 생계형저축)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른 출자금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 사.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 아.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에 따른 장기회사채형저축
 -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 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에 따른 녹색저축

- 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4.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과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인출은 주택구입이라는 계좌목적과 관련된 특정 요건의 충족(법으로 정한 특정 상황으로서 과산, 개인회생, 실업, 자연재해, 사망, 상해·질병 또는 해외이주 등 발생 시에는 예외)을 조건으로 하고, 제18조의 계좌잔액 합산 원칙 및 제19조의 통화 환산 원칙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 ⑦ 계좌잔액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
- ⑧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거나 미국과 FATCA 협력관할권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금융계좌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러한 계좌는 해당 FATCA 협력관할권에서 개설되고 해당 FATCA 협력관할권의 금융회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FATCA 협력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요건에 종속되고 감독됨을 전제로 한다.